



새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?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(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)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혜택, 즉 2009년에 신규 자동차, 소형 트럭, 주택용 차량,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주세와 지방세, 그리고 소비세나 기타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적용 대상 공제액은 차량 구입 가격에서 \$49,500 까지입니다. 귀하의 소득이 \$125,000를 초과하거나 부부 공동 신고액이 \$250,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.

그러므로 지금 차량을 구입하면 내년 소득 신고 시에 공제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만하면 지금 새로 자동차를 구매할 만 하지 않습니까?

웹사이트: irs.gov/recovery .

